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9-6 |
|----------|--------|

| | |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과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고용 안정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거 신설(안 제24조제3항)
- 나. 근로자 전입정착금 신설(안 제24조의2)
- 다. 법령 개정사항, 조직개편사항 등 반영(안 제12조, 제14조, 제16조)
- 라. 법령 위임 없이 주민제한 사항 등 법령입안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1조, 제25조제3항,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200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합의
-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1. 16.~12. 6.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불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0조제3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50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를 “제30조제1항”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부스는 조립 부스 2개 기준
2. 부스임차비 100분의 80 지원, 지원금액은 2백만원 이내
3.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 지원한도액은 3백만원 이내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 근로자

자녀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2. 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1.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이 곤란한 영세한 기업체

2. 근로자 보수와 재산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단체, 기업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
을 지급받은 학생은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④ 장학생 인원, 장학금 금액, 장학생 신청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알선 및”을 “알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
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근로자 전입정착금)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근로자 전입정착금(이하 “전입정착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이전부터 다른 시·
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관내 공장등록 된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
자 와 가족 세대원

③ 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정착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나 그 가족 세대원이 2년간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할 경우

2. 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2년간 다른
시·군·구에 전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조 제목“(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을“(지원 취소·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각종 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보조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보조금 등의”를“보조금”으로“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휴·폐업”을“휴업·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전입정착금 적용례)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전입하여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p> <p><u>제11조(공유재산 지원)</u> 유치기업이 공유재산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u>제12조(산업시설용지 지원)</u>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u>제40조제3항</u>에 따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군이 토지를 기업에 대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u>제30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50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u> ③~④ (생략)</p> <p><u>제14조(이자 지원)</u> ① 군수는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또는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u>경우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5년간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의 연 100분의 6 이하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u> 1.~3. (생략) ② (생략)</p> | <p>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p> <p><u><삭 제></u></p> <p><u>제12조(산업시설용지 지원)</u>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u>제40조제4항</u>에 따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군이 토지를 기업에 대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u>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u> ③~④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이자 지원)</u> ① 군수는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또는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u>경우에는 5년간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의 연 100분의 6 이하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u>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6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군수는 <u>군의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p> | <p>제16조(우선구매와 판로지원) ① 군수는 <u>군의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p> |
| <p>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수는 <u>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기본부스(조립, 부스 2개)를 기준으로 하며, 부스임차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2백만원 내로 한다.</u> 2. <u>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한도액을 3백만원 내로 한다.</u> ③ (생략)</p> | <p>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수는 <u>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기본부스는 조립 부스 2개 기준</u> 2. <u>부스임차비 100분의 80 지원, 지원금액은 2백만원 이내</u> 3. <u>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 지원한도액은 3백만원 이내</u> ③ (현행과 같음)</p> |
| <p>제23조(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u>군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학생을 거창군 근로자자녀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② <u>장학생의 자격 및 인원,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장학생은 추천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다만, 고등학생은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u></p> | <p>제23조(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u>군수는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 근로자 자녀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u> 1. <u>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u> 2. <u>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u></p> |

| 현 행 | 개 정 안 |
|---|--|
| <p>2. 장학생 인원과 장학금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p> <p>3. 학교, 단체, 기업 또는 군의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그 금액을 공제한다.</p> <p>③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생신청서를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은 노동조합 대표에게, 구성되지 않은 기업은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표는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에 장학생신청서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④ 장학생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p> <p>1. 영세하여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이 곤란한 기업체</p> <p>2. 근로자의 보수 및 재산정도</p> <p>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u>알선</u> 및 <u>진입도로</u>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p> <p>1.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이 곤란한 영세한 기업체</p> <p>2. 근로자 보수와 재산 정도</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단체, 기업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p> <p>④ 장학생 인원, 장학금 금액, 장학생 신청절차는 군수가 정한다.</p> <p>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u>알선</u>, <u>진입도로</u>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u>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 <p>제24조의2(근로자 전입정착금)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근로자 전입정착금(이하 “전입정착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 세대원 ③ 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정착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나 그 가족 세대원이 2년간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할 경우 2. 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2년간 다른 시·군·구에 전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5조(지원 취소·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p> <p>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p> <p>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p> <p>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p> <p>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u>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p> <p><u>제26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u></p> |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p> <p>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폐업한 경우</p> <p>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p> <p>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p> <p>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u><삭 제></u></p> <p><u><삭 제></u></p> |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 1) 제24조제3항 :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거 마련
- 2) 제24조의2 :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규정 신설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 (2019년) | 2차년도 (2020년) | 3차년도 (2021년) | 4차년도 (2022년) | 5차년도 (2023년) | 합계 |
|-----|-------------------|-----------------|-----------------|-----------------|-----------------|-----------------|-----------|
| 세출 |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1,000,000 |
| |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 -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200,000 |
| | 소계 | 20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1,200,000 |

3. 관련 의견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전입활성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인구 증가와 기업의 고용안정화 도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55\text{명} \times \text{월}30\text{만원} \times 12\text{개월} \approx 200,000\text{천원}$

2.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00\text{명} \times 50\text{만원/인당} = 50,000\text{천원}$

작성자 : 미래전략과장 임 영 수